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공익법인은 2007년 12월 공시제도 도입 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시제도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내용과 방식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한계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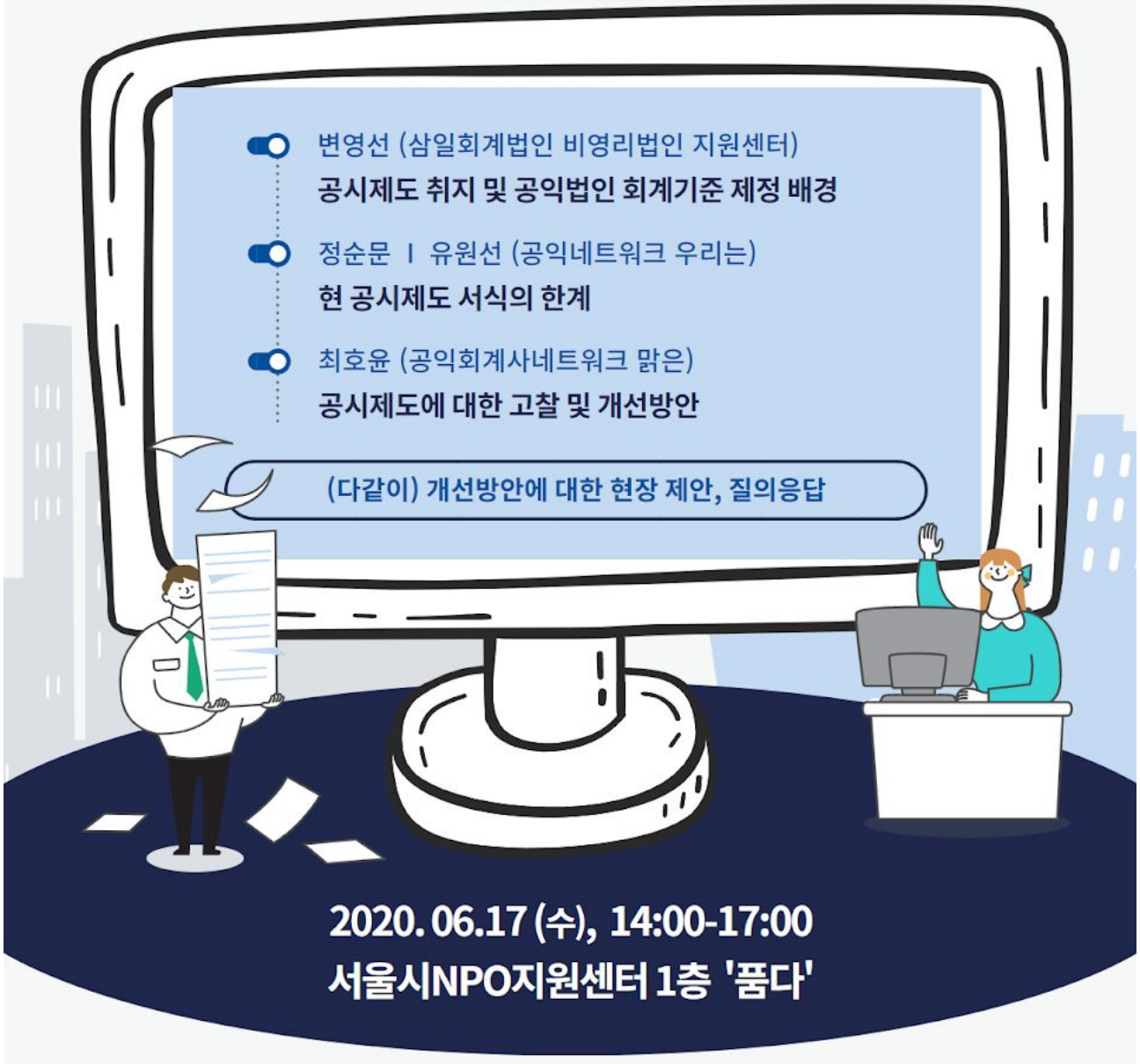

2020. 06.17 (수), 14:00-17: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현 공시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1. 배경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에 관한 공시제도를 2007년 12월 도입하여 공익법인이 매년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대상 단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공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공시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공시제도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다양한 정부의 보고 및 신고 양식을 통합하여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 현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
-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공시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개선 방향과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 도출된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국세청, 관련부처에 전달하고자 함.

3. 개요

- 주제 :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현 공시제도 개선방안
-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대상 :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조직운영 책임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 등 30명 내외
- 주최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사)시민사회. 신권화정 (사)시민 사무처장

4. 주요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담당
발제1	2:00~2:30	공시제도 취지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배경	변영선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발제2	2:30~3:00	현 공시제도 서식의 한계	정순문(재단법인 동천) + 유원선(함께걷는아이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발제3	3:00~3:30	공시제도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최호윤 회계사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논의	3:50~5:00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제안, 질의응답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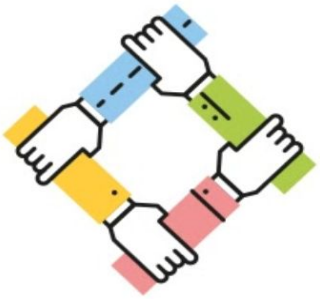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NPO NETWORK 'WE ARE'

🤝 why 왜 '우리는' 시작되었나?

NPO 조직운영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NPO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NPO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역시 활성화 보다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NPO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함께 만났습니다.

🤝 what 무엇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가?

- 건강한 조직을 지향합니다.
- 자발적으로 조직운영 점검과 개선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만듭니다.
- 변화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성장을 서로 돕습니다.
-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됩니다.
-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 제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갑니다.
- 이를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이어갑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NPO의 투명성과 책무성 향상으로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제도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된 NPO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2018년에는 'NPO 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를 함께 개발하였고 2019년에는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조직운영 가이드'를 만들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조직운영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NPO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 및 비영리단체를 위한 서식 : 바로가기

'우리는' 관심있는 NPO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www.facebook.com/NPO.Weare NPO.WeAre@gmail.com

현 공시제도 서식의 한계

정순문 · 유원선(공익네트워크 우리는)

1. 개요

1) 공시제도의 목적

- 비영리단체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 및 시민의 신뢰를 높여 기부문화 활성화 하는 것이 공시제도의 중요한 목적임.
- 현 공시제도는 대규모 배분단체 중심으로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공시제도는 소규모 단체들까지도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사람도 쉽고, 보는 사람도 쉬운 서식이 필수적임.

2) 현 공시서식의 어려움

- 2018년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시행되며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 확립됨.
  - 비영리단체가 제출 및 공시하는 기부금 관련 자료 중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는 매년 4월에 공시하는 서식 중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이며, 그 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등의 공시서식,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은 내용이 중복되고 각 항목의 기재방법도 명확하지 않음
- 공시 및 보고서식에 관해서는 실무상 여러 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안내도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 통일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주지 못함.
-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보조금과 이자 제외), 운영성과표(모두 포함), 출연재산보고서(3월_이자 제외) 간의 포함되는 내용이 다름. 이에 따라 기부금 합계 금액이 달라 혼선을 줄 수 있음.
-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보고의 문제 발생. 각 관할부처별로 요청하는 서식도 다양하고 중복적이라 현장의 비효율이 발생함. <첨부. 사회복지법인 보고 및 공개 관련>

2. 공시 서식의 부적합성

1)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 _ 의무공시

- 입력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그 외 사업 ' 또는 '기타 ' 지출이 과다집계되는 문제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을 기능에 따라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시서류도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비용분류는 모금액이 큰 대형 배분단체를 상정한 것으로서, 배분사업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 비용이 '기타비용 ' 으로 표기되므로 일반인들에게 회계처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2)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상 수입원천 구분 및 지출에 대응되는 수입원천 추적의 어려움

- 다양한 수입원(기부금 외 정부보조금, 이자수익 등)에서 정부보조금이나 이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해야 하는 애로점이 존재 . 또한 이는 년도말 통장잔고증명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단순 입력실수 등의 오류 조차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지급처 기재논란

- 지급처 기재는 수혜자(단체)가 있는 자선단체에 해당하는 서식으로 특정 수혜자(단체)가 없는 경우 작성방법이 작성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큰 의미가 없음.
- 지급처는 수혜처와는 다른 비용의 지출처(각종경비지출)가 되어 작성이 어렵고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 어려움. 특히 이러한 경우 100만원 단위로 지급처를 모두 나열하는 것이 어떤 의미있는 데이터가 되는지 의문임.

1. 수혜자(단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시1> 탈가정청소년을 거리에서 만나서(버스로 아웃리치) 상담하여 타 기관과 연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_지급처는 식사재료구매업체, 차량유지를 위한 경비, 활동가교육비, 활동가 인건비

   ----> 실제 수혜자는 거리의 청소년들(식사지원, 약품지원, 기초필요물품지원 등)임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를 납입한 업체에 대한 지출비용이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수혜자에 대한 왜곡된 혼란을 부축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됨.

   예시2> 숲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_지급처는 조경공사업체, 작업자인건비 등
2. 시민단체 활동_캠페인,옹호,연구,교육사업 등
3.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모법인

➢ 100만원 이상 수혜자 지출의 경우 건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부담이 크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발생.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수혜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유사한 서류(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3월에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식에서는 1000만원으로 기준이 다름

➢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 수혜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움

나. "②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타	인건비	임대료	기타
코드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 본 서식의 취지가 이사진과 출연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 모든 기부자를 나열하는 것인지에 대한 취지 불분명
- 고액 출연자의 개인정보 공개 문제 : 기부사실을 알리고 싶은 기부자도 있으나 알리고 싶지 않은 기부자도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 오히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①성명 (사업자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출연재산 종류	④출연가액	⑤이사장과의 관계	⑥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⑦성명 (사업자명)	⑧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출연재산 종류	⑩출연가액	⑪이사장과의 관계	⑫비고

4) 기타

- 시설 등을 위탁받은 공익법인등이 별도 회계로 구분 운영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까지 받는 위탁시설을 법인 회계에 포함하여 공시할 경우, 법인의 규모가 수탁시설, 수탁대행사업비로 인해 거대하게 부풀려지므로 회계감사의무, 장애인고용의무 등 대규모 법인에 대한 규제가 소규모의 모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 발생. 이를 법인의 순규모와는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는 등의 기술적인 대안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공시제도 및 서식의 개선방향

기부금 관련 보고나 공시가 요구되는 이유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비영리단체가 (i) 관련 법령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ii)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체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복잡하고 보기 어려운 형태의 공시서식을 지양하고, **비교가능하면서도 작성하기 쉽고, 보기 쉬운 서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작성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 공식 상담처 마련** : 비영리단체마다 규모, 사업내용, 재정상황이 매우 다양한데 작성기준에 대한 안내가 없고 문의처마다 다르게 답변하는 것이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회계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를 양적으로만 늘리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지는 않음. 작성기준에 대한 일괄적인 안내와 교육, 공식적인 상담처가 마련되어야 함.

❖ 배분사업을 하는 **대규모 기관 중심의 서식**을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기타의 문제 해결)일반 시민들이 공시내용을 보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년도의 특이사항이나 작성 · 해석에 필요한 내용을 주석을 달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비교가능하지만 좀 더 열려있는 서식이 되어야 함.

❖ 일정 규모 이하의 단체에 대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처리, 공시 부분의 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관의 확대, 공시대상 기관의 확대 등 전체적인 공시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소규모 단체가 이러한 공시의무 이행을 통해 일반시민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내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단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비영리단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규제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원하는 일임.**

나아가 현재의 공시제도나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사회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회계'의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인 수치만으로는 해당 NPO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온전히 알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함.

사회복지법인의 보고 및 공개 관련 내용 정리

2019.11.29

구분	내용	시기	양식	보고처	공개	관련법	비고
예산	예산보고	12월 (다음회계연도 시작 5일전까지)	- 세입세출예산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 반영) - 예산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주무관청(시.군.구)	시군구 게시판과 법인 홈페이지에 제출 20일 이내 /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단식부기 모든 사회복지법인
	예산추경	발생시(7일이내)	-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예산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주무관청(시.군.구)	시군구 게시판과 법인 홈페이지에 제출 20일 이내 /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단식부기 모든 사회복지법인
결산	결산보고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세입세출결산서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감사보고서	주무관청(시.군.구)	시군구 게시판과 법인 홈페이지에 제출 20일 이내 /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단식부기 모든 사회복지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서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	국세청		[법인세법] [지방세법]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내역서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특정기업 등 광고명세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모든 동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 - 보유부동산 명세서 -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보고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 감사실시 / 3개월 이내 감사보고)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4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4개월 이내)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기본사항)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공개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복식부기 (공익법인회계기준)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구분	내용	시기	양식	보고처	공개	관련법	비고
기부금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발생시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신청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모든 공익법인
	후원금수입 및 사용명세서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포함)	주무관청(시.군.구)	시군구 게시판과 법인 홈페이지에 제출 20일 이내 /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 및 후원물품 포함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보고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 기부금내역 공시 및 공개시스템	[법인세법]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2019년 신규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3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국세청		[법인세법]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2019년 신규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6월 말 (회계연도종료 후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국세청		[법인세법]	기부금대상단체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	발생시 (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이내) _보통 연말에 다음년도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 -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임의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회칙) - 대표자 이력서 - 임원명단 - 모금계좌 통장사본	시.도 (민관협력담당관) [10억 이상시 _행정자치부]		[기부금품모집법]	1,000만원이상 기부금품 모집 건 / 개별사업 기준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모집을 중단 _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모집완료보고서 - 금융기관예치증명서 - 모집내역서 - 홈페이지게재자료	시.도 (민관협력담당관) [10억 이상시 _행정자치부]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게재	[기부금품모집법]	
	기부금품모집 사용완료보고	기부금품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기부금사용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 의뢰) 또는 지출증빙서류 - 홈페이지 게재자료	시.도 (민관협력담당관) [10억 이상시 _행정자치부]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게재	[기부금품모집법]	
이사회	이사회 회의 (예,결산, 임원변경 등)	사유 발생시 (연초, 연말 / 연 2회 이상)	- 이사회회의록	주무관청(시.군.구)	시.도 법인시설정보공개 게시판 및 법인 홈페이지에 10일 이내 / 3개월간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이사 및 감사 변동	사유 발생시	- 이사 및 감사 임면보고서 (이력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포함)	주무관청(시.군.구)		[사회복지사업법]	
	정관변경	사유 발생시	- 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 정관변경안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무관청(시.군.구) -목적사업, 기본재산 변경건은 (시.도지사) 인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2020/6/17)

공인회계사 최호윤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1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 등은 다음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상증법 50조의 3, 상증법시행령 43조의 3)

① 재무제표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 명세
⑤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나) 입법취지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을 규정한 상증법 제50조의3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공시 '**제도**'의 개선할 사항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도하지 않은 제도적 혼선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 홈택스 공시 방식

공익법인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공유하는 장을 굳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인 홈택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① 투명성에 대한 제약

투명성은 관련정보를 보기 원하는 자가 a) 원하는 정보를 b) 원하는 시기에 c)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충족된다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국세청 홈택스라는 '장소적 제약'과 0시부터 6시 사이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② 방법적인 제약

인터넷 활용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Web Site 접근 이외의 정보접근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③ 추가적인 다른 방식의 제안

투명한 재무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홈택스 공시 방식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내용/양식을 a) 정보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 b) 단체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공시하는 방식 등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부자의 정보검색 편의성

공시된 재무정보 정보이용자는 기존 후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후원자도 포함한다. 그럼에도 현행 공시시스템이 제공하는 방식은 공익법인의 이름을 알아야만 해당 단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이라면 특정한 단체를 모르더라도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분야와 대상의 범위만 지정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검색할 수 있어야 잠재적 후원자의 기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 단체 이름을 선택(입력)하는 방식에서 단체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분야와 규모 등을 검색조건으로 단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단체 검색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b) 단체의 분야를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예술문화, 기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에 기재한 국제비영리단체분류기준으로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방

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 보고 단위

상증법 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으로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하는 주체는 '공익법인 등'이다. 보고주체로서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정의를 상증법 규정은 '법률행위 주체' 단위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상증법 제16조과 상증법시행령 제12조)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법적 실체로서의 단위와 공익법인등으로서의 단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보고 주체로서의 공익법인을 법적실체단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상증법은 법적실체와는 다른 단위를 사업 성격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차이이며, 공시대상 결산서에 포함되는 회계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단위가 공익법인등으로 분류 되지만(상증령 제12조 제3호)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인 사회복지시설/기관도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등(상증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시행령 39조 1항 4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이기도 하고 시설 단독으로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고유번호 단위로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母) 법인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된 정보로 공시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산공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의무공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있으며,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점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3 공시 '**양식**'의 개선할 사항

가) 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정보의 종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자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른다면 결산공시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결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한다는 전제(유용성)하에서 목적적합성,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산공시 양식은 기부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현행

공시양식은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목적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사용관리목적의 세무관리 측면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법인등은 a)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b) 일반에 공개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와 공익법인으로서 '결산서류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에서 관리목적으로 보고 받는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내용은 정보이용자가 국세청으로 한정되지만 일반에게 공개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결산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국세청이 아니라 일반 사회대중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에는 기부자로서, 잠재적기부자로서,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일반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정보로 국한되고, 작성자나 이용자 관점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부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별도 공시함으로 공시 내용이 복잡해지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 지분증권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
- 운용소득 사용집행액 (사용 내역이 아닌 집행액 총액)

나) 이중 보고 방지

3월[1]에 국세청에 이미 보고한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내용에 포함된 정보는 결산 공시 내용에 공익법인이 별도로 다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이미 보고 받은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공시내용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정확성과 편의성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 기부금의 모집 및 지출명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와 양식을 통일하고 한번만 보고/공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주식 등의 출연 취득보유및처분명세
  과세 관청인 국세청 관점에선 상증법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보유지분비율, 자산대비주식가액의 비중이 중요한 정보이지만 일반 기부자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며, 설사 필요하다면 새롭게 입력할 것이 아니라 '출연재산 보고'시 보고한 정보를 공시내용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12월 결산법인 기준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국세청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출연재산 보고' 정보를 공시내용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출연재산 현황과 출연재산 사용 계획과 진도 내역은 출연재산 보고시 이미 보고된 내용이므로 '출연재산 보고'시 보고 받은 정보를 공시내용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연재산 보고시 보고하지 않는 '목적사업 사용'과 '수익사업용 사용' 금액을 구분하는 정보는 출연재산 보고 양식을 개정하여 출연재산 보고시 포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출연재산 보고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양식이므로 이미 보고한 정보에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내부간 거래 제거할 수 없음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간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통합결산서에는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단순합계하면 통합 결산서 금액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지만 결산서류공시 양식에선 단순 합계로 결산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간 거래를 제거할 수 없는 오류가 개선되어야 한다.

라) 기타사업부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과 환입

공시 양식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서 기타사업부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을 기재할 칸이 없어서 합계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기타사업부문의 수익과 비용 금액을 정확히 표시할 수 없고, 첨부하는 운영성과표 금액과도 다르게 표시된다.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⑩사업외손익
		금 융				부 동 산			⑨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마) 분명하지 않은 용어 정의

공시 양식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혼선은 양식 작성방법(요령)에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실무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수입및지출명세서'에서 사용하는 '(대표)지급처' 용어가 사용 빈도에 있어 대표적인 지급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별 사용금액에 있어 대표적인 지급처를 의미하는지가 불 분명하다. 또한 '국외사업'은 단순한 사업대상 지역이 해외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사업 수행지가 해외인 경우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바) 기부금 유형 구분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은 운영성과표에서 사업수익의 기부금으로 표시하지 않는 반면 '기부금품의 수입및지출명세서'에서는 기부금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결산공시양식 내에서 기부금 총액이 서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기부금 분류기준으로 사업수익에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품 금액을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기부금 관련 양식을 보완해야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사) 공익법인 유형별로 기부금 지출 내역 표시 형식 구분

공익법인이 지출하는 공익목적사업비는 자선단체 등이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분배 비용과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된다.

분배비용의 경우 사업성과 이해 측면에서 금액과 수혜자 인원 모두 중요한 정보이지만 자선단체 이외의 경우 직접적인 수혜자가 없으며, 사업비를 지출한 거래처의 수는 기부자들의 의사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다. 단체 입장에선 지급거래처 수를 관리하기보다는 목적사업달성을 위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며, 기부자 또한 시민단체들의 거래처 수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공시 양식에 분배비용 지출액을 기재하면서 수혜자 인원수를 기록하더라도 분배비용이외의 비용에서는 수혜자 인원수를 기재하지 않는 별도로 구분된 양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시 정보의 속성

가) 주요 의사결정(운영) 구조

공익법인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정보는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다.

공시대상 결산정보들을 확정한 정기 총회(재단은 정기 이사회) a) 일시와 b) 참석 인원 등 결산 정보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사업보고서

결산 공시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외에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체가 공시하고 싶은 연차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첨부(또는 url 명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기부금용도별 구분

공익목적사업 수익세부현황에서 후원금을 후원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 영리법인, 모금단체 등 다른 공익법인,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기부자의 기부의사결정이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기부금 구분을 기부자 속성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 용도별로 구분하고, 사용한 내역도 기부금 용도별로 구분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공익법인등의 수탁책임관리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라) 사업비용 표시 방식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선 사업비용을 본문에 표시하는 방식과 주석으로 표시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주석으로 표시하는 경우 사업 프로그램별 사업비용을 운영성과표에 표시하므로 이를 결산공시에서도 표현할 수 있도록 양식 보완이 필요하다.

5 기타 제안

가) 주무부처별 국세청 공시 결산 정보 활용

비영리법인은 결산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국세청 공시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중 업무를 방지할 수 있겠다.

국세청에 결산 공시한 단체의 경우 결산서를 공시하면 주무부처에 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부서간 협조와 통일이 필요하다.

나) 기부금 보고서 종류별 혼선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출연 받고, 출연 받은 기부금품을 사용하면 기부 받은 내용과 사용한 내역을 보통 3번 내지 4번 관련 부처에 보고 한다.

보고 종류/명칭	운영성과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작성 원칙 근거 규정	공익법인회계기준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부금품법
보고 시기	정기총회/이사회	결산 후 3 월(국세청)	결산 후 4 월(국세청)	사용기한 완료 후 60 일 이내(등록청)
작성 기준	발생주의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작성 대상	기부금(품)	기부금	기부금품	기부금품
작성 기간	단체의 회계기간	단체의 회계기간	단체의 회계기간	등록한 사용기간 (회계기간과 다를 수 있음)
기본재산 출연액 처리	제외	포함	포함	포함
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처리	포함	포함	제와	포함
사용액 기록 방식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계정과목	지출 연도의 지출목적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	작성방법에서 열거한 지출목적별로 구분하여 기록	'사업비'와 '모집비용'을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수입지출형식으로
수혜자 구분 표시 단위		1,000 만원 이상 지출처	100 만원 이상 지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작성방법에서 현금주의 인지 발생주의인지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현금주의 용어인 '수입'과 '지출'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공시자료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실제 현금이 지출된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물도 '모집'과 '사용내역'에 포함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행위는 한가지임에도 4가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작성 기준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각각 다르고, 보고서가 담고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지원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포함하는 가 여부도 다르고, 기본재산 출연 금액을 포함하는 가도 서로 다르다.

각각 다른 작성 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기에 각각이 표시하는 기부금 총액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단체가 작성해서 공시한 각각의 보고서가 다르면 이를 보는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르냐는 혼돈에 빠지기 쉽고, 나아가 사회가 단체를 불신하게 만든다.

관리, 감독 관청이 필요해서 받는 보고서는 해당 관청들이 알아서 해석하면 되니 문제가 안되지만, 일반에게 공개되는 보고서는 작성 기준을 통일하거나 통일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